

개방이사추천위원회운영규정

제정 2009. 2. 17.
 개정 2016. 3. 1.
 개정 2017. 3. 1.
 개정 2021. 11. 15.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학교법인청강학원 정관(이하 “정관”이라 한다.) 제20조의3에 의거 개방이사추천 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의 기능 및 조직·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구성) ①위원회는 청강문화산업대학교 대학평의원회에 둔다.

②위원회 위원정수는 5인으로 하고 그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대학평의원회에서 추천하는 자 3인
2. 법인 이사회에서 추천하는 자 2인

③위원회에는 의장을 두며 위원의 호선으로 선출한다.

제3조(활동기간) 위원회는 개방이사 및 감사의 추천사유 발생 시 구성하며, 위원의 임기는 개방이사 및 감사의 추천을 완료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.

제4조(기능) ① 추천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의결한다.

1. 개방이사 후보자 추천에 관한 사항
2. 감사 대상자 추천에 관한 사항

②법인에 추천하여야 할 인원은 개방이사는 2배수, 감사는 단수를 추천하며, 법인으로부터 요청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대상인원을 추천한다.

제5조(회의) ①의장은 법인으로부터 개방이사 및 감사 1인의 추천을 요청받거나,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.

②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③위원회 회의록은 참석자 전원이 자필로 서명한다.

제6조(간사)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며, 간사는 청강문화산업대학교의 대학 평의원회 업무 담당자가 맡는다.

제7조(보고) 의장은 회의 내용을 대학평의원회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제8조(준용)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사립학교법, 법인정관 및 대학평의원회 규정을 준용한다.

부 칙

① 이 규정은 2009년 2월 17일부터 시행한다.

① 이 규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① 이 규정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① 이 규정은 2021년 11월 15일부터 시행한다.